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62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4523	박지혜의원	2025.11.2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2026.3.24.)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기후 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214947	안호영의원	2025.12.0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4.01.)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4.15.) 상정, 축조심사
	2216260	김주영의원	2026.01.22.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4.22.)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 5. 19.)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5. 1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되,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
전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
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
거가 없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
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
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

록 하되, 그 대상을 ①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②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
 - 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다.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 · 관리 의무 등) ① · ② (생 략)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 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u> <u>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u> <u>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u> <u>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u><신 설></u>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 · 관리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 다</u> <u>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 <u>1.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u> <u>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u> <u>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u> <u>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u> <u>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u> <u>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u> <u>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u> <u>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u> <u>특별법」 제23조에 따라</u> <u>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u> <u>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u> <u>지 발전사업</u>

④ · ⑤ (생 략)	<u>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 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 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u> <u>다.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 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 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u> ④ · ⑤ (현행과 같음)
--------------------	---